ACT 내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새 법률



ACT 정부는 2021 년 중 ACT Multicultural Recognition Act 란 새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. 본 법률은 ACT 내 다문화주의에 대한 ACT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증명합니다.

상담 기간은 지금부터 시작해 2021 년 5 월 초까지 실시됩니다.

상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현재 발의된 Multicultural Recognition Act 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;
- 다양한 문화 및 언어를 가진 캔버라인들과 교류하는 단체들을 참여시킴과 동시 정보를 제공하고; 또한
-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한 모든 ACT 주민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.

새 법률은 3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. 이는 다문화 헌장(Multicultural Charter)과 다문화 자문위원회(Multicultural Advisory Council), 그리고 정부의 우선순위 수립과 지역사회 보고에 대한 지침이 될 체제입니다. 요소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세요.

다문화 헌장(Multicultural Charter)

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'주요 원칙'을 강조하는 다문화 헌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. 해당 주요 원칙은 정부, 사업체 및 지역사회가 참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ACT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.

다문화 자문위원회(Multicultural Advisory Council)

새 법률에는 다문화 장관이 임명한 현재의 다문화 자문위원회가 유지됩니다. 위원회의 역할은 ACT 다문화 장관에게 다양한 이슈 및 주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위원회의 정확한 역할 및 구성은 상담 과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.

우선순위 수립 및 보고 방식에 대한 지침이 될 체제

새 법률은 ACT 정부와 정부 기관이 우선순위를 수립하고, ACT 지역사회를 위해 정책, 프로그램, 및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이행하며, 평가할 때 지침이 될 것입니다. 새 법률 하에는 또한 기관들은 합의된 우선순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공식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.

참여 방법 및 더 자세한 정보

지역사회 상담 워크샵에 참여하고 싶다면 www.communityservices.act.gov.au/multicultural/multicultural-recognition 을 방문해 참여 의사를 등록하세요.

질문은 multiculturalaffairs@act.gov.au 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세요.

www.yoursay.act.gov.au/multicultural-recognition-act 에서 설문조사를 작성하세요.

ACT 내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새 법률



상담을 위한 ACT 다문화 헌장 초안

ACT 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다문화 지역사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저희는 호주 최초의 사람들을 인정하고, 그들의 전통과 문화,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ACT 및 주변 지역에 공헌한 바를 존중합니다. 저희는 화해를 중시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예전에도, 또한 앞으로도, 원주민의 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
저희는 모든 ACT 주민들을 소중히 여깁니다.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온정의 손길을 베풂으로써, 우리의 영토가 인류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, 조화롭고 정중한 삶의 터전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저희는 ACT 가 차별 없는 정중한 사회가 되는 데 있어, 모든 이가 각자의 직장 및 기업 속, 개인으로서 또한 단체로서, 맡은 역할이 있음을 이해합니다.

저희는 모두 다음의 공통 원칙을 공유합니다:

- 호주 및 ACT 에 대한 공동 헌신;
-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 헌신;
- 문화와 언어,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;
- 배경 상관없는 상호 간 존중; 또한
-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.

다문화 지역사회로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다문화 사회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:

- 사회 제공 서비스들을 다문화 지역사회가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들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;
- 활동적인 시민 활동, 참여 및 사회 통합을 장려하는 것;
- 문화적 다양성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;
- 우리의 단체, 기관 및 시설들이 다문화주의 철학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점을 더욱더 이해하고 장려하며, 지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; 또한
- 우리의 다양한 다문화 지역사회들이 발전하고 훌륭한 이 도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

주요 질문:

1. **ACT 다문화 헌장에는 어떤 사항들을 포함해야 할까요?**
2. **헌장은 ACT 의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해야 할까요?**
3. **위에 기재된 요소들 외 ACT 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**
4. **하나의 지역사회로서는 어떠한 목표와 소망을 둬야 할까요?**

ACT 내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새 법률



ACT 다문화 자문위원회의 가능한 제정법상 역할

ACT 다문화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다문화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:

- 다양한 문화 및 배경을 가진 캔버라인들이 ACT 에서 사회, 문화, 경제 및 도시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장벽을 낮출 방안 모색;
- ACT 내 다문화 지역사회가 이용하는 정부 서비스의 제공 방식 개선;
- ACT 의 다양한 다문화 지역사회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;
- 이민자 지역사회, 특히 난민 및 피난민이 ACT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도움과 이민 지역사회의 사회 융화 개선;
- ACT 및 주변 지역 내 지역사회 간 조화로운 관계 형성; 또한
- 이외 다문화 장관이 제시하는 기타 역할.

부가적으로 위원회가 수행할 업무:

- 관계가 있는 단체 및 대표자들과의 상담을 거쳐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파악하는 것.

주요 질문:

1. **다문화 자문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?**

ACT 내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발의된 새 법률



다문화 자문 위원회의 가능한 구성

- 위원회는 9~1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
- 각 위원의 임기는 3 년입니다
- 위원회를 반으로 나눠 두 그룹의 위원을 18 개월마다 교대로 새로 임명합니다
- 위원회 위원들은 임기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
- 의장과 부의장에게는 급료가 지급되며, 정확한 금액은 ACT Remuneration Tribunal 이 책정합니다
- 본 법률은 5 년의 시행 기간을 거친 후 검열을 받게 됩니다
- 위원회의 구성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문화 장관이 임명합니다. 장관은 후보자들의 문화적 배경, 성별, 나이, 및 현대 이슈 전문성 등 다양한 조건들을 동시에 고려할 것입니다. 장관은 아래 분야의 대표 전문가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

  - 신생 지역사회
  - 이민자 정착
  - 지역사회 및 인종 이해관계
  - 언어 서비스
  - 통역사 및 번역사
  - 리더십
  - 사업
  - 지역사회 어학원
  - 지역사회 발전
  - 지역사회 대표 단체
  - 종교 단체
  - 청년층
  - 예술 및 문화
  - 다세대 및 다민족 사회

주요 질문:

1. **다문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기간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?**
2. **각 위원의 가능한 재임 수, 또는 연임할 수 있는 햇수는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?**
3. **다문화 자문위원회의 회의 개요를 회의 이후 공개 발표해야 할까요?**
4. **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, 만약 우선시되어야 하는 전문직이 있다면, 어느 분야인가요?**
5. **새 법률의 내용 중 다문화 자문위원회 관리에 대한 규정을 세울 때, 이외 고려해야 할 다른 논점들이 있나요?**

접근성

ACT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서비스, 또한 관리하는 행사 및 시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일반 활자 문서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문서를 **대체 형태**로 지급받고 싶을 경우 – 예를 들어 대형 인쇄물 또는 오디오 형태 – **(02) 6205 0282** 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은 **통번역 서비스**가 필요할 경우 – **131 450** 번으로 전화하세요.

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분은 **National Relay Service(국가중계서비스)**가 필요할 경우, **133 677 번으로 전화해 133 427 번으로 연결을 요청하세요.**